

4. 측정기기의 종류. 부착대상 사업장

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

TMS관제센터 연결대상 배출사업장

“수질환경보전법” 하위법령 및 “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시행규칙개정으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 근거 마련

TMS 관제센터 연결대상 배출사업장
배출사업장등에 부착하는 오염 물질 측정기기는 사업장별로 폐수의 특성에 따라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부착

생물학적 처리시설

유량계, 자동시료채취기, 일반항목 및 유기물질 측정기기, T-N, T-P 측정기기, 자료전송장치

생물학적 처리시설이외의 처리시설
중금속측정기기를 추가로 부착

측정기기의 종류	부착대상 사업장
PH, BOD, COD, SS, T N, T P 자동시료채취기(AUTO SAMPLER) 자료수집기(DATA LOGGER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-3종 폐수배출사업장 ● 처리능력 200톤/일 이상 공동방지사설 ● 하.폐수종말처리장 ● 2006년 시범대상 사업소 183 개소 ● 10,000 톤/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, 산단폐수 종말처리장
전산전력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동방지사설 ● 1-5종 폐수배출 사업장
용수용 적산유량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동방지사설 ● 1-5종 폐수배출 사업장
폐수용 적산유량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동방지사설 ● 1-4종 폐수배출 사업장 ● 5종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톤/일 이상인 사업장

* 부착면제 사업장

- ▶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생산공정에 순환, 재 이용 등으로 1일200만 톤미만 배출사업장
- ▶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방지사설로 전량유입 사업장
- ▶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
- ▶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의 “방지사설설치의 면제기준”에 해당하는 사업장
- ▶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경우와 연간 30일 미만으로 조업하는 사업장
- ▶ 원 폐수중에 BOD, COD, SS, T-N, T-P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 폐수의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